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주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196

발의년월일 : 2019. 5. .
발 의 자 : 주미희 의원 외 10 명

1. 제정이유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대상·신청·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5. 예산수반사항 : 별첨(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입법예고 결과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참고사항 : 별첨(관련부서 검토의견서)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이하 "교통비"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통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한 고령운전자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2항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교통비 지급액은 지원대상자 1명마다 한 차례에 한정하며, 시비부담과 경기도비 보조금을 지원재원으로 한다.

제6조(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체험교육
2. 관련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시 소재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2019년 3월 13일부터 지원대상자가 된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소관 실·과		안산시의회
입안자	시 의 원	주미희의원 대표발의 (행정 3574)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176

제안년월일 : 2019년 6월 24일
제 안 자 : 도시환경위원장

☐ 수정이유

○ 조례 제정의 주목적인 안전한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 제명으로 수정하여 조례 제정 목적을 명확화하고, 이에 따른 조례 목적과 책무를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수정함.

☐ 주요골자

○ 조례 제명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안산시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함.

○ 조례 제명 수정 내용에 따라 목적과 책무를 수정함.(안 제1조, 제3조제1항)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안산시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고령운전자 자신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환경 조성”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원 안	수 정 안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고령운전자 자신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환경 조성----------.
② (생 략)	② (원안과 같음)